

이 사 회 규 정

목 차

제1장 총 칙	1
제2장 구 성	2
제3장 회 의	3
부 칙	8

이사회 규정

1998. 5. 13. 제 정
1999. 5. 6. 개 정
2021. 5. 17. 개 정
2022. 6. 20. 개 정
2022. 12. 23. 개 정
2024. 12. 18. 개 정
2025. 12. 18. 개 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 이 규정은 정관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회장을 선임하며,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,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 장) 이사회의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5 조의 2 (선임사외이사)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(이하 “선임사외이사”)를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.

②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선임사외이사의 이사 임기로 한다.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후임을 선임한다.

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(사외이사 단독회의)의 소집 및 주재
2. 사외이사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요구 및 필요사항 이사회 보고
3. 이사회 의장·대표이사·경영진과의 소통 창구 역할
4. 이사회 연간 안건계획 및 정보제공 적시성 점검
5. 사외이사 평가 및 이사회 운영 개선 권고
6. 의장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 직무 대행

④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·자료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회사 비용으로 제공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
② 정기 이사회는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0시 당사회의실에서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 ① 이사회는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개최시기,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상법상의 의결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
- (4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5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(8) 신주의 발행 및 감자
- (9) 회사채의 발행
- (10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
2.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
- (1)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(2)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(3) 회사의 예산·결산
- (4)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, 채무의 보증에 관한 사항
- (5)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
(6)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

(7) 해외증권의 발행

3.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 상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구한 사항

2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2 조 (긴급집행)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13 조 (위 임)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정관 제38조의4에 의거 이사회내의 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본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제별로 심의하여 의결한다.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변경하여 결의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 14 조 (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경영위원회

2. ESG위원회

3. 감사위원회

4.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

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
④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자문위원회) 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 16 조 (경 영 진) ① 정관 제38조의4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.

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경영진은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로 구분하며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사장 및 경영진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.

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.

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.

⑥ 경영진의 급여,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.

제 17 조 (이사에 대한 집무집행감독권)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 1항의 경우, 이사회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않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
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약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20 조 (이사회 지원) 회사는 이사회 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 행 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 행 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 행 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

이사회 규정 제13조 (위임)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.

1. 정기주주총회의 일정, 장소 등 통상적 업무
2.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등기사항
3. 통상적인 일반예산 및 월 결산
4. 어음할인,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
5. 부동산 및 예적금의 담보제공
6.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각 (CD, 개발신탁증권 등)
7. 자기자본 2.5% 미만의 타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
8. 자기자본 2.5%미만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
9. 자기자본 5% 미만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, 공장의 신설 및 장·단기 자금의 차입
10. 자산총액 2.5% 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
11.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
12.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승인된 투자산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관련한 사항
13. 관련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
14. ~~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의 승인 (자사주 FUND포함) (삭제)~~
15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16.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17.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18.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19. 조직, 인사,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
20. 사업계획, 사업구조조정 추진
21.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
22.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23.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24. 자기지분의 2.5% 미만의 증여 및 기부금 제공 <변경>
25.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
26. 기타 채무관련 주요 현안
27.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<별표2>

경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

이사회 규정 제13조 (위임)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경영위원회에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.

① 상법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
- 1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2.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3.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- 4. 사채의 발행 (공모 사채 제외)
- 5.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(단, 자산총액 10% 이상은 제외)

②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

- 1. 자산총액 10% 미만,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법인 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
- 2. 자기자본 2.5% 이상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
- 3.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, 가지급금, 금전 대여
- 4. 자기자본 2.5% 이상의 소송 제기
- 5. 자기자본 5%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, 공장의 신설 및 장·단기 자금의 차입
- 6. 자기자본 2.5% 이상의 증여 및 기부금 제공
- 7. 회사의 예산·결산
- 8. 해외증권의 발행
- 9.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열거된 부의대상이 아닌 경우로서, 거래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

<별표3>

ESG위원회에 위임할 사항

이사회 규정 제13조 (위임)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ESG위원회에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.

1. 회사의 ESG 전략 기본 방향
2. 회사의 ESG 이행사항 결과 및 계획
3. 회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
4. 회사의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5. 기타 위원회에서 지속경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